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단체소송 활성화 방안 등〉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28호)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60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일괄피해구제 제도 신설 등	4
2.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방안	10
(1) 개요	10
(2) 예방적 금지청구 소송 도입	11
(3) 제소적격단체의 범위 확대 등	17
(4) 법원의 소송허가제도 폐지	19
(5)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25
(6)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등	33
3. 사업자등의 자료 및 정보제공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38
【참고자료 1】 일괄구제 주요 사례	42
【참고자료 2】 소비자단체소송의 진행 과정(현행)	43
【참고자료 3】 소비자단체소송 현황	44
【참고자료 4】 등록소비자단체 현황	45

I. 제안경위

1. 유동수의원안

가. 제 안 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1. 17.

다. 회 부 일 : 2025. 11. 18.

2. 정태호의원안

가.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2. 5.

다. 회 부 일 : 2025. 12.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유동수의원안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송허가제에 따라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송허가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단체소송제도 도입 이

후 약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송허가제 폐지 요구가 제기됨. 아울러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인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의 계속을 그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도 포함하여 확대하는 등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을 통한 효과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의 차원에서 그와 동일·유사한 피해사례의 소비자에 대한 선제적·일괄적 피해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단체소송의 제기요건에 예방적 금지청구를 추가하는 등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일·유사한 소비자 피해사례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소비자도 일괄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구제 및 단체소송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등).

2. 정태호의원안

현행법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두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

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상으로는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허가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2006년 「소비자기본법」 전면 개정 및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규칙」의 시행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된 이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송 제기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주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또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및 발생가능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통한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함(안 제70조,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5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일괄피해구제 제도 신설 등

- 개정안은 피해구제 합의권고 대상을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서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동일·유사한 소비자 피해사례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소비자도 일괄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 제59조의2 신설).

현 행	유동수의원안
제57조(합의권고) 원장은 <u>피해구제신청</u> 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u><신 설></u>	제57조(합의권고) ----- <u>피해구제신청</u> <u>사건의</u> ----- -----. 제59조의2(일괄피해구제) ① 원장은 제55조제4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사건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하여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u>피해구제의 신청이 없이도 그 사건(이하 “일괄피해구제사건”이라 한다)을 처리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일괄피해구제에 대하여는 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u>피해구제신청사건</u> ”은 “ <u>일괄피해구제사건</u> ”으로 본다.

□ 현행법¹⁾상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경우, 사실조사 등을 거쳐 구제안을 마련하고,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있음.

-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피해구제 처리 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1)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3.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제57조(합의권고)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8조(처리기간)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구제 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 일)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42,844	45,507	47,997	57,177	62,996
처리(A)	42,844	45,507	47,997	57,177	60,993
합의*(B)	21,586	22,798	24,904	30,261	34,404
미합의**	21,258	22,709	23,093	26,916	26,589
합의율(B/A)	50.4	50.1	51.9	52.9	56.4
평균 처리기간	15.5	15.2	17.2	19.9	21.4

* 처리결과 계약이행,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시정, 수리·보수, 환급으로 종결된 건

** 처리결과 상담기타, 처리불능, 조정신청, 취하·중지,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건

*** 2026.1.23. 현재 2,003건 처리중으로, 합의율 및 평균처리기간, 처리기간 초과 사건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한국소비자원)

□ 한편, 피해구제 과정에서 유사·동일한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실무상 일괄구제²⁾를 실시하고 있음.

<일괄구제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건수	9	17	24	26	34	110

* 일괄구제는 소비자원이 개별 소비자의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 피해까지 구제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어 접수 건수, 합의율, 처리기간 등은 집계되지 않음.

(자료: 한국소비자원)

□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원의 일괄피해구제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피해구제의 효율성, 일괄피해구제 권고에 대한 사업자

2) 예시) 항공편 결항 및 대체편 지연 / 온라인쇼핑몰 배송 지연 / 신축 아파트 유상 옵션 계약 불이행 등
(참고자료 1. 일괄피해구제 사례 참조)

의 수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유사·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구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구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소비자원에서 실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괄구제 권고에 대한 사업자의 수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를 포함한 일괄피해구제는 당사자인 소비자가 다수라는 점,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계획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간, 피해구제 절차 등에 대해 법에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상 같거나 유사한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일괄분쟁조정인 집단분쟁조정은 그 처리 기간을 30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음.

- 둘째, 개정안은 당사자의 소제기가 있는 경우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제59조³⁾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 중 소비자의 일부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3) 제59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소비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이 법 시행 전 피해구제 신청 후 피해구제절차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이 실무상 하고 있는 일괄 피해구제 권고에 대한 사업자들의 수용도 및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용하는 의견임.
- **관련 단체 등**⁴⁾은 소비자별 사용환경, 과실여부, 손해정도, 희망하는 피해구제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음에도 피해구제를 일괄 처리할 경우, 소비자 의사에 반하거나 과도한 보상 또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일괄피해구제의 범위·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운영에 과도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임.

4)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집단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 또는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류기간은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1.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2. 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제68조의2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의 보류를 신청하는 사건

④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 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소비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방안

(1) 개요

□ 개정안은 소비자 단체소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에 ① 예방적 금지청구소송 도입, ② 제소적격 단체 확대, ③ 소송허가제도 폐지 ④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⑤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2006년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단체소송 소제기 건수가 8건⁵⁾에 불과한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임.

<소비자 단체소송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유동수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주 요 내 용
① 예방적 금지 청구 소송 도입	제70조	제70조제1항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제기 가능
② 제소적격 단 체 확대	-	제70조제1항 제1호의2 신설	제소적격 단체에 공정거래위원 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 체 추가

5) 【참고자료】 3. 소비자단체소송 현황

구분	유동수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주 요 내 용
③ 소송허가 신청제도 폐지	현행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현행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법원의 단체소송 허가제도 폐지
④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	제72조의2 신설	제72조의2 신설	단체소송의 원고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법원에 신 청
⑤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등	-	제72조의3, 제72조의4, 제72조의5 신설	자료의 제출을 통한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
부칙	- 시행일: 공포 후 6 개월 경과 - 단체소송 적용례	- 시행일: 공포 후 6 개월 경과 - 단체소송 경과조치	

(2) 예방적 금지청구 소송 도입

□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그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경우에도 단체소송
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유동수의원안 제70조, 정태호의원안 제
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

현행	유동수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 ----- ----- ----- -----권익의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거나, 그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법원에-- ----- ----- ----- -----.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① ----- ----- -----제20조를----- -----신체나----- ----- -----또는 그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 ----- ----- -----.
1. (생략) <신설> 2. ~ 4. (생략)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현행	유동수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75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75조(확정판결의 효력) ----- ----- ----- -----제70조제1항 각 호----- ----- ----- ----- ----- ----- ----- ----- ----- 1.·2. (현행과 같음)
1.·2. (생략)		

☐ 현행법상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제20조6)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단체소송은 소비자 피해 발생을 전제로 이에 대한 구제나

6) 「소비자기본법」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사업자의 위법행위 등으로 아직까지 피해를 입지 않은 다수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⁷⁾임에도

단체소송의 청구범위가 소비자의 권익이 직접 침해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8건의 소 제기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단체소송 제기 요건으로 소비자권익의 직접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예방적 금지청구를 도입하려는 것임.

- 유동수의원안은 “그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 정태호의원안은 “그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소비자권익의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지의 여부와 별도로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⁸⁾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청구범위

7)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 방안 연구(이승진, 지광석, 황의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2018. 1.)

8) 명백하다: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와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

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조기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및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에서도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⁹⁾.

□ 다만, 유동수의원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 등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 유형을 사전에 예측하여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정태호의원안은 제70조제2항에 ‘소제기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것’을 두고 있으나, 피해발생이 임박한 경우 예방적 금지청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17. 4. 27. 2014헌바405; 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참조).

9)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의 발생을 단체소송 제기 요건으로 하지 않고 동법상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해당여부 및 위법행위 발생 우려 가능성 등을 소송 제기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또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이승진·지광석·황의관,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2018. 1.)

□ 개정안에 대해,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동수의원안과 같이 예방적 금지 청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금지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정태호의원안의 공익상 필요 요건 및 소송제기 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권익 침해행위 금지·중지 서면 요청 의무는 단체소송 활성화 및 권리구제 측면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편, **관련 단체 등**¹⁰⁾은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법률상 명시되지 않아 법적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AI 등 신기술 분야의 사전 위험 평가 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예방적 소송 가능성이 확대되면 R&D, 신사업 추진 시 보수적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0)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3) 제소적격단체의 범위 확대 등

- 개정안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적격 단체의 범위에 소송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7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정태호의원안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u>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u>을 제기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2. ~ 4. (생략)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①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u>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로서 그 설립 목적, 참여하는 소비자단체의 수, 운영인력 및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협의체</u> 2. ~ 4. (현행과 같음)

□ 현행법령¹¹⁾은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적격 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단체,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18개로, 17개의 소비자단체와 12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1개의 소비자단체 협의체(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있음¹²⁾.

□ 그러나 현행법은 단체소송 제기가 가능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11)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12) 【참고자료】 4. 등록소비자단체 현황(18개)_17개 소비자단체, 1개 소비자단체 협의체

한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①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② 정회원 수가 1천명 이상이며, ③ 등록 후 3년이 경과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단체 협의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임에도 ② 정회원 수 1천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행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이에 개정안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적격 단체의 범위에 소송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는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단체소송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임.

(4) 법원의 소송허가제도 폐지

- 개정안은 단체소송의 공익성 등 본안 소송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별도의 사전 허가절차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제73조 및 제74조 삭제)하는 한편,

이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를 제기할 때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현행	유동수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73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삭 제>	<삭 제>

현행	유동수의원안	정태호의원안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삭 제>	<삭 제>

현행	유동수의원안	정태호의원안
② <u>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u>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생략) ② <u>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u> ③ (생략)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70조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u> ----- -----<u>신청할</u>----- ----.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70조제1항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u> ----- -----<u>법원에</u> <u>신청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74조제1항은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요건으로 ①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 ②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의 흠결이 없을 것, ③ 소제기단체의 사업자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중지 서면 요청 이후 14일 경과 등을 모두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법원의 단체소송 허가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본안 소송이 시작됨에 따라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¹³⁾을 해결하고자

13) ‘호텔스닷컴 청약철회 제한 사건’의 경우 2017년 9월에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21년 9월에 소송허가가 결정되어 소송허가신청부터 소송허가결정까지 4년이 소요되었음.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단체소송의 허가요건 중 ①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 요건은 본안 소송에서 심리될 사항이고, ② 소송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의 흠결 여부는 본 소송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¹⁴⁾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것이 가능함.

또한, ③ 사업자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중지행위 서면요청 후 14일 경과 요건은 사업자의 응답을 필수로 하지 않는다는 점, 신속한 소비자권리구제 측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 감안할 때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적격, 소송 대상과 범위의 확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들을 확정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절차가 필요하나¹⁵⁾,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서 원고적격, 소송대상 및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사전 허가절차의 필요성이

14) 「소비자기본법」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1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訴狀)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印紙額)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낮다는 의견이 있음¹⁶⁾.

□ 따라서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해 소송허가절차로 인한 소송지연을 해소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또한, 단체소송 제기 단체에 대한 보전처분 청구권 부여(안 제76조제2항)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 제76조제2항은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법원의 소송허가권 삭제에 수반되는 개정사항으로 소 제기 단체가 소송제기 단계에서 보전처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송이 오랜 시간 진행되는 동안에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소송 활성화 및 소비자 피해구제 측면에서 수용하는 의견이나,

관련 단체 등¹⁷⁾은 단체소송 제기 여부가 소송요건에 대한 사전 심사 없이 소비자단체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변경되어 분쟁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방어비용 및 경영

16) 자료: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 방안 연구」(이승진·지광석·황의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2018. 1.)

17)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부담이 증대될 수 있으며 기업가치 훼손으로 주주 등에게 연쇄적 피해가 우려되는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5)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 개정안은 소비자 단체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또는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72조의2 신설).

현 행	유동수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신 설>	제72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70조의 단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또는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제72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70조의 단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또는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현행	유동수의원안	정태호의원안
	<u>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u>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u>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또는 그 발생 가능성의 증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u>정당한 이유로</u>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u>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u>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u>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또는 그 발생 가능성의 증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u>정당한 이유로</u>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u>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대한 명령(이하 “자료제출명령”이라 한다)의 목적</u>

현행	유동수의원안	정태호의원안
	<u>지정하여야 한다.</u>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u>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u>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개정안 제72조의2는 법원이 단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또는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도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또는 그 발생 가능성의 증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 사유로 보지 않으며, 불응 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소비자 단체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명령제도¹⁸⁾보다 강화된 수준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소비자권익침해 행위의 존재 또는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익구제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18)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문서제출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비교>

구분	문서제출명령	자료제출명령
근거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제72조의2(자료의 제출)
대상	민사소송	소비자 단체소송
주체	당사자	당사자
객체	상대방 당사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제3자	상대방 당사자
범위	인용문서 인도·열람문서 이익문서와 법률관계문서	해당 소비자권익침해 행위의 존재 또는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증명에 필요한 자료

□ 개정안과 같이 단체소송과 관련된 자료의 획득과 분석 등에서 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소비자가 위해 및 그 발생 가능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일정부분 해소할 경우 피해 소비자 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자료제출명령의 불응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주장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¹⁹⁾, 「특허법」 제132조²⁰⁾ 등이 있음.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

<개정안 자료제출명령제도와 현행 제도 비교>

항목	개정안	자료제출명령 (공정거래법)	자료제출명령 (특허법)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대상	소비자 단체소송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소송	모든 민사소송
주체	침해 또는 침해 가능성 주장 당사자	손해 주장 당사자	침해 주장 당사자	모든 당사자
객체	상대방 당사자 한정			상대방 당사자 및 제3자 포함
범위	자료	자료(자진신고 관련 자료 제외)	자료	문서(서증)에 한정
요건	소비자권익 침해 행 위의 존재 또는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증명에 필요 한 자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① 당사자가 소송 에서 인용 ② 신청자에게 인도· 열람할 사법상 권리 ③ 신청자의 이익 또는 법률관계 관련
거부 사유	정당한 이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민소법 제304조~제306 조) 및 증언거부권(민소 법 제314조) 등

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 「특허법」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항목	개정안	자료제출명령 (공정거래법)	자료제출명령 (특허법)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거부 사유 예외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소비자권익침해행 위의 존재 또는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증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		-
비밀 유지 명령	유동수의원안 X 정태호의원안 ²¹⁾ O	O	O	-
·위반시 처벌	X	O	O	-
명령 불응 효과 (당사 자)	①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②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u>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u>

□ 또한, 소비자의 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등의 증명이 필요하여 제출된 영업비밀의 경우 법원의 판단의 자료로 쓰이는 용도 이외에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므로, 정태호의원안과 같이 비밀유지명령제도와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음.

21) 정태호의원안 제72조의 3(비밀유지명령)

□ 개정안에 대해,

-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구제 측면에서 수용하는 의견이나,
- 관련 단체 등²²⁾은 영업비밀 자료가 제출될 경우 소송대리인·전문가 등 다수 관계자가 열람하게 되어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미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성’만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 제기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획득하는 전략소송이 남발될 우려 등이 있다는 의견임.

22)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6)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등

- 개정안은 소비자 단체소송 시 자료제출로 인한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①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②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③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을 도입함(안 제72조의3, 제72조의4, 제72조의5 신설).

현행	정태호의원안
<신설>	제72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단체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

현행	정태호의원안
	<u>할 필요가 있다는 것</u>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2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현 행	정태호의원안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2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개정안은 ①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안 제72조의3), ②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안 제72조의4), ③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안 제72조의5) 등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소송 시 자료제출로

인한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단체소송에서 영업비밀이 소송자료에 포함되고 외부 사용·공개 시 영업상 피해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소송관계자에게 소송 외 사용·공개를 금지하는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의3).
- 비밀유지명령의 요건이 없거나 사후에 상실되면, 신청인이나 명령 상대방은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72조의4).
- 비밀유지명령 사건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기록 열람을 청구하면, 통지하고 일정 기간 열람을 막아 비밀유지명령 신청 기회를 보장함(안 제72조의5).

□ 다만, 개정안의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사 입법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²³⁾의 경우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밀유지명령 위반 시 벌칙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3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1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4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7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사업자 등의 자료 및 정보제공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개정안은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이 요청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6조제1항제5호).

현행	유동수의원안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86조(과태료)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78조제1항²⁴⁾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업무 수행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

24) 「소비자기본법」

제78조(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①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자료 및 정보의 사용목적·사용절차 등을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조정을 미리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소비자단체에 제공된 자료 및 정보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이 아닌 용도 및 사용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음.

- 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업자 등의 이름,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²⁵⁾,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음.

□ 이에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규정의 실효성을

25) 「소비자기본법」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등의 품질·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써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단체는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상호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고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원에서 요구한 정보 및 자료를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공 시 제재수단을 도입하려는 것인데, 소비자단체는 민간조직이고, 소비자원은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기관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이를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중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의 경우 자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그 실효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자료 미제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그러나 과태료 부과대상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 관련 자료 미제출 사업자로 한정하더라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²⁶⁾에서 정하고 있

2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6조(감정부) ①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감정위원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

는 바와 같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 및 의무위반 시 벌칙 규정 도입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15

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를 둘 수 있다.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①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조정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조정당사자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조정위원, 감정위원, 조사관 및 조정중재원의 임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조정 또는 감정 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벌칙) ①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과태료) ①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자료 1】 일괄구제 주요 사례

○ 항공편 결항 및 대체편 지연

- 항공편의 결항 및 대체편 제공 지연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구제 사건 접수
- 담당자 조사 결과, 항공편 결항 사유는 '정비 점검'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사 배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나, 대체편 제공 지연 등 항공사의 대처가 미흡했음을 확인
- 이에 동일 항공편 탑승객(128명) 대상으로 대체편 탑승일에 따른 차등 배상과 장시간 현지 체류 등을 고려한 추가 배상 등 일괄구제 추진
- 항공사가 소비자권고 권고를 수용하여 대체편 탑승일에 따라 18~35만원을 배상하고, 장시간 현지 체류에 따른 10만원 추가 등 총 4,162만원 일괄 배상

○ 온라인쇼핑몰 배송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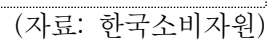
-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사업자가 통관 절차 진행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배송을 지연한다는 소비자 피해 다수 접수
- 사업자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한 PG사 3곳 확인 결과, PG사에 동일 사업자 관련 피해를 접수한 소비자 255명 추가 확인
- 이에 PG사 3곳에 총 271명에 대한 결제 취소 및 환불을 권고하여, 약 5억 8,000만원 환불 진행

○ 신축 아파트 유상 옵션 계약 불이행

- 수원 소재 신축아파트에서 유상옵션으로 설치한 식기세척기의 색상, 빌트인 설치 방식 등이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피해구제 사건 접수
- 조사 결과, 해당 단지 내 식기세척기를 유상옵션으로 설치한 세대 모두 계약과 다르게 이행됨을 확인했으나,
- 사업자는 당초 계약한 모델이 제조사 사정으로 단종되어 약관에 따라 동급 이상의 모델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품의 색상과 설치 방식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일괄구제 추진
-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희망하는 색상으로 식기세척기 도어 교체 및 빌트인 재시공을 권고했고,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여 총 268세대에 재시공(약 3,200만원 상당) 실시

(자료: 한국소비자원)

【참고자료 2】 소비자단체소송의 진행 과정(현행)



【참고자료 3】 소비자단체소송 현황

구분		소제기	원고	청구취지	소송 경과	최종 결과
1	하나로텔 레콤 건 (구 SKT)	2008. 7.	· 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 단체 · 한국 YMCA 전국연맹 (소송 불허가)	고객정보의 무단 제공행위 중지	· 1심: 약관 자진 시정→ 소 취하(2009.1)	소 취하 (사실상 승소)
2	티머니 건	2015. 12.	· 한국소비자연맹	분실·도난된 티머니 카드의 신고 및 환불 거부 의 약관 중지	· 1심: 원고 패소(2017. 7.) · 2심: 원고 패소 · 대법원 상고 기각(2022. 6)	원고 패소
3	이통사 건 (SKT)	2015. 12.	·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 등의 중지	· 1심: 원고 패소(2017. 8.) · 2심: 원고 패소 · 대법원 파기환송(2023. 6) → 합의 소 취하	소 취하 (사실상 승소)
4	이통사 건 (KT)	2015. 12.	· 한국소비자연맹	상동	· 1심: 원고 패소(2017. 8.) · 2심: 원고 패소 · 대법원 파기환송(2023. 6) → 합의 소 취하	소 취하 (사실상 승소)
5	이통사 건 (LG U+)	2015. 12.	· 한국소비자연맹	상동	· 1심: 원고 패소(2017. 1 1.) · 2심: 원고 패소 후 항고 취하(간주)(2018. 3.)	패소 후 상고 포기
6	한국 전력 건	2016. 10.	· 한국소비자연맹	기본공급약관에 따른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 요금 부과행위의 중지 및 금지	· 1심: 원고 패소(2018. 10.) · 2심: 원고 패소(2019. 11.)	패소
7	호텔스닷컴 건	2017. 9.	· 한국소비자연맹 등 5 개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 회, 녹색연 전국협의회 (소송 불허가)	전자상거래법과 달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약관의 사용 중지	· 소 진행 도중 유사 사 안에 대한 사업자 승 소로 소 취하 결정	소 취하 (사실상 패소)
8	롯데 하이마트 건	2018. 12.	· 한국소비자연맹	상품 확인을 위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에도 일률적으로 교환, 환불 등을 거부하는 약관 사용	· 1심: 약관 자진 시정→ 소 취하(2019. 1.)	소 취하 (사실상 승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참고자료 4】 등록소비자단체 현황

단체명		설립연도	회원수 (천명)	주요 활동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1976	-	· 소비자관련 법·제도를 위한 정책연구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소 단 협 회 원 (12 개)	한국YWCA 연합회	1922	60	· 생명사랑 공동체운동전개 · 여성 인권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만들기
	한국여성 소비자연합	1964	318	· 취약계층교육, 여성사회 교육 · 환경보호운동
	소비자 시민모임	1983	5	· 상품비교정보제공 · 시장조사 및 소비자의식조사
	소비자교육 중앙회	1971	306	· 여성재교육, 주부대학 및 대학원 운영 등 평생교육진흥사업 · 사회환경개선사업
	한국소비자연맹	1970	45	· 소비자 감시활동 및 연구 · 상품비교정보제공, 소비자교육
	한국소비자 교육원	1981	86	· 소비자 지식과 정보기술의 개발 · 취약계층교육
	한국YMCA 전국연맹	1914	80	· 시민중계실 운영과 소비자상담 · 사회복지활동
	녹색소비자연대	1996	16	· 녹색소비생활실천 네트워크 운영 · 녹색먹거리 운동
	소비자공익 네트워크	1994	30	·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 자원재활용 운동추진 및 환경교육
	한국부인회 총본부	1963	700	· 양성평등문화구현사업 · 여성사회문화교육 및 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
	대한어머니회 중앙회	1958	23	· 여성인적자원 개발 교육사업 · 양성평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미래소비자행동	2010	0.8	·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 법과 제도 개선 활동
소 단 협 비 회 원 (5 개)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1959	5,000	· 여성단체의 의견반영과 정부 정책건의
	소비자와함께	2012	0.5	· 소비자정보제공 · 조사 및 연구사업
	금융소비자연맹	2001	153	· 금융상담 및 피해구제 · 금융교육, 세미나 개최 등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1989	23	· 소비자정의센터 운영 · 소비자권익 및 알권리 보호
	해피맘	2013	4.6	· 안전한 사회를 위한 소비자운동 · 다문화가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자료: 공정거래위원회)